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과정
——金長生을 중심으로——

鄭 玉 子

머리말
一. 金長生의 生涯
二. 《喪禮備要》의 補完
三. 《家禮輯覽》의 成立
四. 《疑禮問解》와 《典禮問答》
맺음말

머 리 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나름의 정신적 질서가 있고 그것은 倫理나 道德으로 규정된다. 그 윤리·도덕의 구체적 실천규범은 예로서 나타나고 있다. 예의 본질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지만 각기 처한 사회와 문화적 영역에 따라 상대적 특수성을 갖게 된다.

예는 도덕과 법의 중간적 위치에서 강제성보다는 긍정적 권유를 특징으로 하며 동양의 유교사회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조선이 國學으로 채택한 性理學은 우주와 인간에 다같이 적용될 보편적 理法인 「天理를 추구하여 人心을 바로 잡는다」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天理를 밝히는 우주론으로서의 理氣論과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 心性을 수양하는 방법론인 心性論을 발달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윤리로서 禮論을 심화시켰다. 禮는 義의 궁극적 표현방식이며 사회정의에 대한 추구와 그 실현방법이었다.

서인과 남인의 연립정권은 혼란한 전후질서를 회복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외적으로는 北伐論, 대내적으로는 禮治를 들고 나왔다. 王道政治의 구체적 방안으로 德治와 禮治가 강조되고 있던 현실에서 예치를 위한 이론체계인 禮論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예론을 공부하는 학문이 禮學이고 예학의 입론서가 禮書이며 예론이 정치문제화한 사건이 禮訟이므로 禮論→禮學→禮書→禮訟→禮治는 상호 연결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兩大禮訟(1659년 己亥禮訟, 1674년 甲寅禮訟)은 예론발달과정에서 일어난 당연한 경쟁이었던 셈이다.

예론의 발달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1] 16세기의 禮書는 독립된 단행본이 아니라 喪·祭禮를 중심으로 祭禮를 강조하면서 《朱子家禮》를 그대로 준수하거나 묵수하는 부분적인 것으로 몇몇 士林學者들의 文集에 편입되어 있는데 불과하였다.[2] 따라서 체제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였으나 가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가문의 생활규범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6세기 사림에게는 四端七情論으로 대표되는 心性論이 주관심사였고 禮論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숙한 단계였던 것이다.

17세기 仁祖대에 이르러 정권을 잡은 서인과 남인의 양대 학계에서 본격적인 禮書가 출간되면서 예론은 성숙하게 되었다.[3] 그 대표적인 학자가 남인학자인 寒岡 鄭逑(1543~1620)와 서인학자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이다. 특히 후자인 김장생은 17세기 禮學時代의 초석을 놓음으로서 조선 예학의 태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아들이자 수제자인 愼獨齋 金集(1574~1656)까지 양대에 걸친 예학연구와 정리작업은 17세기 전반 예학성립기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는 李珥→金長生→金集→宋時烈로 이어지는 西人學統의 중심인물이었을 뿐만아니라 이 학파가 모집단이 된 정파가 西人→老論으로 계속 집권함으로서 조선후기사회에서 계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김장생의 예서를 집중분석하려는 것이다.

우선 김장생의 생애를 年譜를 기초로 시기구분하면서 재구성하여 살펴보려한다. 다음에 그가 정리·저술한 禮書들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려 한다. 방법은 〈朱子家禮〉와 비교하되 조선화하는 실례를 찾으려 한다. 나아가 김장생의 禮學이 禮書의 성립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어떠한 歷史性을 갖는가 그 성격을 음미해 보려 한다.

김장생이 젊은 시절 同學 申義慶의 《喪禮備要》를 보완한 작업이 그 예학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제일 먼저 점검해 본 다음, 그의 예학 연구의 금자탑이라 할 《家禮輯覽》의 성립을 집중 분석하겠다. 《疑禮問解》는 그의 아들

(1) 부록 I 참조
(2) 부록 I 의 앞부분 참조
(3) 鄭玉子, 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韓國文化》 10

金集이 아버지 사후에 제자들과의 예론문답을 정리한 것이므로 김장생의 직접 저술이라기 보다는 부자합작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典禮問答》은 인조반정후 인조의 私親에 대한 예우문제로 당대의 실력자들과 문답한 서간문의 모음으로 책으로 볼 수는 없는데, 두 저작을 한데 묶어 개관하였다.[4]

一. 金長生의 生涯[5]

김장생은 1548년(명종 3) 7월 8일 서울 皇華坊 貞陵洞第에서 아버지 黃岡 金繼輝와 어머니 平山 申氏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光山, 字는 希元, 號는 沙溪, 시호는 文元이다.

그의 이름과 같이 오래 살아 84세의 수를 누린 그의 생애는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548년~1578년(31세) 성장기

(2) 1578년(31세)~1613년(66세) 활동기

(3) 1613년(66세)~1623년(76세) 은퇴기

(4) 1623년(76세)~1631년(84세) 전성기

---

(4) 조선시대 禮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은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 된다.
黃元九, 1963 〈李朝 禮學의 形成過程〉《東方學志》 6
黃元九, 1963 〈所謂 己亥服制問題에 대하여〉《延世論叢》 2
李乙浩, 1967 〈禮概念의 變遷過程〉《大東文化研究》 4
姜尙雲, 1968 〈禮訟과 老少分黨〉《亞細亞學報》 5
金成俊, 1975 〈沙溪 金長生의 生涯〉《百濟研究》 6
柳正東, 1978 〈禮論의 諸學派와 그 論爭〉《韓國哲學研究》 中
張世浩, 1981 〈金長生의 禮說에 대한 研究〉《大學院論問集》, 高麗大
黃元九, 1981 〈朱子家禮의 形成過程〉《人文科學》 45
池斗煥, 1982 〈朝鮮初期 朱子家禮의 理解過程〉《韓國史論》 8
尹絲淳, 1983 〈朝鮮朝 禮思想의 研究〉《東洋學》 13
裵相賢, 1985 〈龜峰 宋翼筆의 禮學思想〉《東岳漢文學論輯》 2
徐首生, 1985 〈寒岡 鄭逑의 禮學〉《韓國의 哲學》 13
金恒洙, 1986 〈寒岡 鄭逑의 學問과 歷代紀年〉《韓國學報》 45
池斗煥, 1987 〈朝鮮後期 禮訟 研究〉《釜大史學》 11
李範稷, 1988 〈朝鮮初期의 五禮研究〉 서울大박사학위 논문
韓基範, 1988 〈愼獨齋 金集의 生涯와 禮思想〉《百濟研究》 19
韓基範, 1988 〈愼獨齋 金集의 家系와 學統〉《論文集》 17, 大田實業專門大學
徐仁漢, 1989 〈仁祖初 服制論議에 대한 小考〉《北岳史論》 創刊號
高英津, 1989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韓國史論》 21

(5) 특별히 주를 달지 않은 사항은 모두 《沙溪全書》의 年譜에 의거하였다.

제 1 기인 성장기에 있어 전환점은 그가 13세 되던 1560년에 龜峰 宋翼弼(1534~1599)에게 從學한 일이다. 이 때에 《近思錄》을 배웠고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 1566년 19세에 判敦寧府事 昌陽君 曹光遠의 손녀이자 僉知中樞府事 曹大乾의 딸인 昌寧 趙氏와 결혼하여 이 해에 맏아들 鑾이 출생하였다.

1567년 20세에 栗谷 李珥의 門下에 들어 그의 학적 계보를 구축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聖學을 터득하고 禮學에 정통하게 되었고 율곡으로부터 특별한 기대와 촉망을 받았다 한다.

1574년 6월 27세때 둘째아들 集(1574~1656)이 탄생하였다. 金集은 1592년 형 鑾이 왜란에 희생되자 가계를 이었을 뿐만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학문에 정진, 수제자가 되어 儒宗의 위치까지 계승하였다.

1577년 4월 30세에 石潭으로 栗谷 李珥를 往拜하였는데 그전에도 수차 왕래하였지만 이 때에 비로소 이이는 송익필에게 김장생을 인정하는 서찰을 보냈다 한다. 김장생의 修學期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제 2 기인 활동기는 1578년 그가 31세 되던 해에 이조판서 李後白의 추천으로 昌陵參奉에 추천되어 벼슬살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비롯되었다. 그의 추천 사유인 薦目은 「沈潛聖經 篤信古訓」인데 영상 洪進과 좌상 盧守愼이 찬성하여 가능하였다.

그는 士大夫 仕宦의 正路라 할 과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활동기라 할 이 시기에 있어 그의 관력은 화려하지 못하였지만 지방관을 주로 역임하면서 학문적 축적을 계속하였다.

1580년 5월 33세에 牛溪 成渾을 坡山에 往拜하였다. 이 해에 스승 송익필에게 人心道心을 논하는 편지를 하여 人性論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1581년 34세 되던 가을 부친 김계휘가 「宗系之誣」를 해결하기 위하여 奏請使로 명나라에 사행할 때 수행하였다가 다음해인 1582년 東還하였다. 이 해에 「才行卓異」라는 筵臣의 추천이 있어서 陞叙의 은전이 있었으나 아버지 김계휘가 급서하는 불행을 당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스승 송익필과의 예학 문답을 통하여 체득한 바가 밑거름이 되어 1583년 36세에 《喪禮備要》의 보완작업을 끝마쳤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한 친구 申義慶(1557~1647)의 유고를 정리·교정하고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다.

1584년 스승인 李珥의 죽음에 임해서 黃榦이 朱子의 복을 입은 예에 의거하여 아버지의 상중에 있었음에도 스승의 상을 입었다.

1586년(39세) 東·西 당쟁이 치열해져 李潑·鄭仁弘 등이 李珥·成渾·朴淳·鄭澈 등과 아버지 김계휘까지 構誣하고, 禍가 宋翼弼에까지 미치매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이 때 어릴 때 스승인 송익필을 피신토록 주선하였다.

1591년 44세로 定山현감에 부임하여 1596년까지 재직하고 이해 12월 8일 戶曹正郞이 되어 明軍의 군량조달 임무를 수행하였다.

1598년(51세) 성혼의 죽음에 곡하고 이 해 가을 《近思錄釋疑》를 완성하였다. 다음해 송익필이 사망, 역시 선생의 예로 곡하였다. 그의 평생동안 세 사람의 선생이 이이·성혼·송익필이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자 생존해 있던 성혼·송익필이 차례로 사망했던 것이다.

1599년 9월 52세에 필생의 역작 《家禮輯覽》을 완성하였다. 「《朱子家禮》를 미완성으로 간주하고 여러 禮家의 설을 모아 조목별로 해석·보충하였을 뿐만아니라 圖說을 책머리에 실어 古今儀物을 징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연보의 설명은 이 책에 대한 정확하고 간결한 서평이라 할 수 있다.

1601년 1월 54세에 스승 이이가 지은 《小學集註》의 跋文을 쓰고 10월 「學行之士」로 천거되어 淸白吏에 피선되었다.

이렇게 저작을 계속하면서 安城군수·益山군수·鐵原부사 등 목민관을 역임하고 사이 사이에 고향인 連山에 퇴거하기도 하는 등 1613년 5월 66세에 癸丑獄이 일어나 완전 은퇴할 때까지 進退를 거듭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활동기라 할 제 2기는 士로서의 측면이 두드러지고 大夫로서는 미약하였다 할 수 있어서 그의 山林的 성향을 강화시켜 1623년 인조반정후 만년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613년 광해 5년의 癸丑獄은 일명 「七庶之獄」이라고도 하는데 명문가 서얼 7명이 정권정복을 기도하는 반역을 꾀했다 하여 일어난 모역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인정권이 만들어낸 誣告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장생의 庶弟인 慶孫과 平孫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김장생은 이 사건에 연루될 상황이었는데 당시 國舅였던 柳自新의 부인 鄭氏가 「그는 당세의 大儒로서 많은 선비들이 따르는데 이제 만약 체포하여 심문하면 크게 인심을 잃을 것이다」라고 광해군에게 조언함으로서 화를 면했다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벼슬살이마저 청산하고 은퇴하고 만다.

1613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기까지 10여년의 은퇴기는 다시 그의 학문적 축적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업적이 《經書辨疑》이다.

그의 학문태도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이었다. 독서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돈하고 단정히 곧바로 危坐(무릎꿇고 정좌함)하여 마음을 오로지하고 뜻을 다하였다. 글자는 그 뜻을 구하고 구절은 그 의리를 깊이 살펴 만일 마음에 개운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다시 생각하고 읽어 반드시 通貫한 후에야 그치니 낮이 다하고 밤이 되어도 먹고 자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한다.

이러한 학적 태도를 병이 나기전에는 폐지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小學》을 최고로 평가하고 학문하는 사람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尊信하고 服行하여 종신토록 準則으로 삼았다. 또한 매일밤 반드시 《中庸》《大學》《心經》《近思錄》 등의 책을 돌아 가며 읽어 익히니 암송하여 자기말 같이 하였다.

《經書辨疑》는 이와 같은 독서의 결과물이었다. 독서하면서 수시로 기록하고 그 취지를 밝히고 의심나거나 석연치 못한 부분을 辨釋하였다. 註說의 同異나 音義가 深僻한 것은 모두 절충하고 고증하였다. 또 여러 친구·門人·後生에게까지 講質하여 그들의 설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실었다 한다.

그 책 서문을 스스로 써서

> 어려서는 失學하였고 약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小學·四子·六經·程朱·諸書를 읽게 되었는데 읽은 경전에 대해 이해못할 곳이 많았고 또 여러 노선생의 학설에 때때로 의심나는 곳이 있어 감히 강제로 따를 수가 없었다(6)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전을 읽어 나가다가 의심나는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 그때 그때 적어 놓았다가 省閱의 자료로 삼았고 혹은 先正에게 묻고 尊信하는 바는 후학에게 訓解하기도 하며 감히 그 사이에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7)

(6) 《沙溪全書》 권5, 經書辨疑序
(7) 위와 같음

고 하였다. 이어서

> 義理를 강론하는 것은 天下 公共의 일이니 先賢도 일찌기 허락한 일이다. 대개 中庸과 大學에 있어서는 혹시 물어 볼 수 있었지만 어찌 감히 이로써 先正에게 많이 구하랴. 단지 여러 친구와 論難·商訂하고 是非를 바르게 했을 뿐이니 무엇이 해롭겠는가[8]

하여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을 토론하고 있다. 이 책은 1618년 그의 나이 71세 때의 역작이다. 이해 4월 退溪 李滉의 문인인 鄭逑가 공주목사로 있으면서 이황의 《喪祭禮問答》을 간행하려 준비중이었는데 古禮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편지를 보내 考證을 도왔다. 이것이 《疑禮問解》의 부록으로 붙어 있는 《喪祭禮問答辨疑》이다.

1623년의 인조반정은 김장생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3월 14일 司憲府 掌令에 임명되었다. 22일 당시의 실력자인 李貴·金瑬·崔鳴吉·張維 등에게 편지를 보내어 당시의 急務로서 다음의 여덟까지를 권유하였다.

1. 輔導君德(君德을 보도할 것)
2. 拯求生民(生民을 구원할 것)
3. 保全廢朝(廢朝를 보존할 것)
4. 審愼庶獄(옥사를 삼가 살필 것)
5. 收用人材(인재를 수용할 것)
6. 振擧紀綱(기강을 떨칠 것)
7. 愜張公道(公道를 넓힐 것)
8. 丕革貪風(탐욕스러운 기풍을 개혁할 것)

이때 김장생은 이미 76세의 노구로서 仕宦을 계속 사양하였지만 士林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 받아 1631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국가의 부름을 받는데 6월 2일 「訓迪多士 元子輔導」(선비들을 가르치고 元子를 보도한다)를 목적으로 특설한 成均館 司業에 임명된 일은 특기할만하다.[9] 주지하다시피 이 직책은 조선후기 山林의 전유물이다시피 했으니 그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닌

(8) 위와 같음

(9) 《仁祖實錄》 권2, 인조 원년 5월 丁巳 「置成均館司業三員 以金長生張顯光朴知誠爲之」

가 싶기도하다. 말하자면 그는 山林으로 예우받은 것이다.[10]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의 그의 비중은

> 반정초 李元翼이 先廟元老로 수상에 배하여 여주에서 입조하여 인심이 비로소 정해지고 뒤이어 金長生·鄭經世·張顯光 등이 차례로 입조하니 인정이 더욱 안정되었다[11]

는 이서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인조 역시

> 근래 士習이 전과 다르므로 모름지기 長者가 司業의 직책을 다해야 한다[12]

고 그를 고무하고 있다.

한편 이해 5월 5일 이미 작고한 인조의 아버지 定遠君을 제사지내는데 祝文의 칭호문제가 제기되었다. 예조판서 이정구, 부제학 정경세가 三公과 의논하여 인조는 선조의 친손자이므로 私親인 定遠君을 考(아버지가 죽은 후에 부르는 칭호)라 정했는데 김장생은 이의를 제기하여

> 君臣은 私親관계에 상관없이 父子之義다. 인조는 선조에게 있어서 사친관계로는 손자지만 入承大統하였으므로 사친인 大院君(定遠君)을 考라 한다면 大統을 오로지 하지 못하고 二本을 만드는 혐의가 있으므로 害禮亂倫이다[13]

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치자 인조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 사람에겐 할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자신이 있게 마련이다. 할아버지만 있고 아버지가 없을 수 있는가? 禮官의 의견이 失禮되지 않는다[14]

고 비답하였다. 君臣간의 이 논쟁은 아직 조선의 예학이 보편화되지 못한

---

(10) 위책 인조 4년 2월 癸卯「政院啓曰 今之宿德老成 無出於其右 使在朝廷 爲益必多 雖在山林 固當召致」

(11) 《沙溪全書》 年譜 癸亥(1623) 4월 14일
「完豊府院君李曙 嘗言於人曰 癸亥反正之初 國人猝聞廢易 不知主上之有聖德 上下驚擾 向背未定 不可以威勢鎭眼事 有至難言者 完平李相國元翼 以先廟元老 拜首相 承召自驪州入朝 人心始定 金沙溪某 鄭愚伏經世 張旅軒顯光 鄭桐溪蘊 次第入朝 人情益安 莫不心向王室 思盡誠忠 賢人之係 國家安危如此云」

(12) 위책 癸亥(1623) 6월 2일
「上曰 近來士習 與前有異 須長者爲此任 多士可以觀感矣」

(13) 위책 癸亥(1623) 5월 5일

(14) 위와 같음

상태에서 전문가의 이론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왕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인조 私廟에 대한 禮論은 계속 논란이 되고[15] 1626년 啓運宮(인조의 생모)의 服制문제까지 제기되었는데[16] 그 때 여러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典禮問答》이다. 왕실의 典禮문제로 인한 예론문답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私廟 親祭시 祝文의 칭호문제를 상소한 그날(5월 5일) 입시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여러 항목에 걸쳐 상주하였는데 그중 주목되는 것은 국왕의 공부인 聖學에 대한 것이다.

> 제왕이 다스리는 요체는 학문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토론하고 義理의 정수를 구하여 모름지기 몸에 체득하고 일에 증험하는 것입니다[17]

라고 전제하고 제왕의 독서순서로 《小學》→《心經》→《近思錄》을 제의하고 학문하는 근본으로 「敬」을 강조하였다.

1624년 2월 16일 이괄의 난으로 南行한 인조를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日新역 앞길에서 맞아 공주로 호종하고 行宮에 입시하였다. 난이 평정되어 왕이 환궁한 후 6월 22일 13개항에 걸친 상소문을 올렸다.[18]

1627년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80노구를 이끌고 兩湖號召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고 分朝하여 남하하고 있는 세자를 공주에 가서 맞아 전주까지 호종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3월 8일 강화도의 行在所로 가서 15일 행궁에서 입시하였다.

> 講和는 權宜에서 나왔고 斥和論은 필연이므로 그 의론이 과격하더라도 優容해야 한다.

는 요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尹煌·姜碩期 등 척화론자들을 변호하였다.

1631년 84세로 마지막 예론을 피력하여 인조의 사친인 대원군(정원군)의

---

(15) 《仁祖實錄》 권2, 인조 원년 5월 丙申條 및 己亥條 등

(16) 徐仁漢, 1989 〈仁祖初 服制論議에 대한 小考〉 《北岳史論》 創刊號

(17) 年譜 癸亥(1623) 5월 5일
「帝王爲治之要 莫先於學問 學問之道無他 討論聖賢之言 求其義理之精 必須體之於身 驗之於事」

(18) 年譜 甲子(1624) 6월 22일
①立大本 ②恢舊業 ③尊洪範 ④講小學 ⑤盡聖教 ⑥敬祀典 ⑦親九族 ⑧體群臣 ⑨親聽政 ⑩革民弊 ⑪罷宣惠廳 ⑫修軍政 ⑬嚴禁衛

追崇문제에 반대론을 제기하여 끝까지 「稱叔」(숙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入承大統爲重 崇奉私親爲非」(입승대통한 것이 중하지 私親을 숭봉하는 것은 잘못이다)라 하여 여러 설을 배척하고 인조의 노여움까지 샀지만 처음 견해를 굳세게 지켜 끝까지 변함없었다.

이해 8월 正寢에서 考終하였다.[19] 그의 예설대로 《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儀禮》를 參用한 喪禮를 써 장사지냈는데 복을 입은 門人이 수백명이었다. 이들은 白布에 加絰·素帶하고 黃榦이 朱子의 복을 입은 제도와 김장생이 이이의 복을 입은 고사에 따랐다.

9월 21일 조정에서 예조정랑 徐挺然을 예관으로 보내어 예를 행하고 왕세자 역시 宮官 鄭弘溟을 보내어 致祭하였으며 本道(충청도)에 護喪 營葬을 명하였다.

10월 19일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連山郡 鎭岑縣 城北里 亥坐之原에 장례지냈고 이듬해인 1632년 4월 부인의 묘를 이장하여 合封하고 맏아들 김집이 家狀을 지었다.

그의 성격은 「의론이 忠厚하고 和平하였으며 刻核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是非·邪正은 엄격히 따졌다」고 한다.[20]

二. 《喪禮備要》의 補完

冠婚喪祭의 四禮중 가장 중요시된 것은 喪禮이다. 모든 예서의 내용은 반이상이 喪禮이고 역대 연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증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김장생 자신도

> 무릇 禮의 번잡스러움이 喪보다 더한 것이 없고 初喪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21]

고 하였을 뿐만아니라

(19) 《仁祖實錄》 권25, 인조 9년 8월 庚戌 김장생의 卒記가 참고된다.

(20) 年譜 丁巳(1617)
「宋文正時烈語錄曰 先生議論忠厚和平 絕不爲刻核之言 而至於是非邪正 則極其嚴截」

(21) 《沙溪全書》 권5, 喪禮諺解序 (1623년 10월)
「夫禮之繁縟 莫甚於喪 亦莫急於初喪」

예는 보통의 일상생활에 행하기는 쉽지만 급박한 凶變시에는 실수하기 십상이어서 평소 강습하지 않으면 合宜하고 應節함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22]

하여 凶變시에 예를 갖추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김장생은 젊은 시절 함께 禮學을 공부하다 요절한 친구 申義慶의 초고를 보완하여 세상에 내놓으니 이 책이 《喪禮備要》이다. 이 작업의 계기가 된 사건은 1581년 김장생의 아버지 金繼輝의 죽음이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과정의 체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이 때 의문점은 스승 송익필과 의논하였는데 왕복한 禮學問答을 참고하여 1583년 36세때 《喪禮備要》의 보완작업을 마쳤다. 그 서문에서

《朱子家禮》가 詳備되어 있지만 혹 古今이 異宜하여 時用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委巷之士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 變常에 통하지 못할까 병으로 여기었다

고 하여 《朱子家禮》가 時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내친구 申義慶이 禮學에 조예가 깊어 일찌기 經籍을 널리 고증하고 그 大要를 따 《喪禮備要》를 지었는데 이 책은 《朱子家禮》를 기본으로 삼고 古今의 예를 참고하고 여러 학자의 설을 일에 따라 添補하여 사이 사이에 時俗之制를 붙여 實用에 편하게 하였다[24]

고 책 해제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책에 김장생 자신이 반복 詳訂하여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였으니 그 규모나 條例는 모두 주자의 뜻을 따른 것이지 감히 臆說을 덧붙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25] 체제를 그대로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차별성이 엿보이고 있다.

김장생은 자신이 이 책의 보완작업에 매달려 成書하게 된 목적을 다음과

(22) 위책 喪禮備要序(1620년 여름)
「禮之用易行於平閒吉常之時 而多失於急遽凶變之際 苟非素所講習 則難以合宜 而應節一有所失」

(23) 위 기사에 이어 「朱子家禮所載 固已詳備 而或有古今異宜 不合於時用者 委巷之士 有不能領其要而通其變 常以是病焉」

(24) 위 기사에 이어 「吾友申生義慶 深於禮學 嘗博攷經籍 攝其大要 編爲一書 名曰喪禮備要 蓋因家禮本書 而參以古今之禮 諸家之說 隨事添補 間亦附以時俗之制 便於實用者」

(25) 위 기사에 이어 「大抵規模條例 悉遵朱子之旨 非敢創爲臆說 疊牀架屋而已」

같이 밝히고 있다.

> 蒙學之士(학문이 어린 선비 ; 필자 주)로 하여금 책을 열면 환하여 창졸간에 考据하는 바 있어 실수없도록 함이요. 뜻이 있어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를 발단으로 참고하고 마침내 聖人이 제작한 뜻을 살펴 하늘의 질서가 常變하는 道를 다한다면 風化에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한다.[26]

이 서문은 책이 이루어진지 37년만인 1620년 김장생이 73세때 썼다. 다시 28년이 지난 1648년 그의 아들이자 수제자인 金集에 의하여 간행되는데 김집은 後識를 붙여 그 경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 책은 申義慶氏의 纂述이지만 아버지께서 修潤하시어 서문을 붙이셨다. 세상에 행한지 여러해가 되었는데 아깝게도 세상에 일찍 책이 나와 간혹 添刪에 미진한 것이 있어 후생중 생각이 얕은 사람이 일에 임하여 미혹할까 병으로 여기시어 修改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다.[27]

申欽(1566~1628)은 이 책의 跋文에서

> 《朱子家禮》가 갖추어져 있어 禮家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 동방에서 더욱 尊崇되었다. 그러나 古今이 異宜한 즉 부득불 빼고 보탤 것이 생겼다. 方俗(우리나라 풍속 ; 필자 주)이 殊用한즉 부득불 變通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이 책의 저술동기이다[28]

하여 시대가 다르고 습속이 다르므로 損益과 變通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 책이 처음엔 申義慶에게서 나왔지만 沙溪 김선생이 실제로 절충하고 闡明하는데 情과 愼을 다하고 敬과 誠을 다한 것이다[29]

하여 김장생이 전력투구하여 정리 보완작업에 힘썼음을 밝혔다. 그 결과

---

(26) 위 기사에 이어 「欲使蒙學之士 開卷瞭然 創卒之間 有所考据而無失 有志好禮者 亦或因此發端 旁通曲暢 終有以考聖人制作之意 而盡天秩常變之道 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云爾」

(27) 《愼獨齋全書》 권6, 喪禮備要序後識 「右申公議慶氏所纂述 先君子修潤而辨之者 行于世有年 惜其書早出 間或添刪 有未盡者 後生淺見 猶不免臨事而迷 先君子嘗以是病之」

(28) 《喪禮備要》(奎 1258) 跋
「朱夫子家禮固備焉 爲禮家三尺 我東方尤尊而崇之 而顧古今異宜 則有不得不損益者焉 方俗殊用 則有不得不變通者焉 此喪禮備要之所以作歟之書也」

(29) 위 기사에 이어 「初出於申君義慶氏 而沙溪金先生 實折衷而闡明之 其竭情盡愼 致其敬而誠」

「위로는 朱子가 立訓한 至意를 서술하고 아래로는 우리 동방 方來의 準則이 되었다」고[30] 평가하였다.

1620년 김장생이 서문을 쓰고 1621년 신흠이 발문을 쓰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간행을 계획한듯 한데 1623년 인조반정, 1627년 丁卯胡亂, 1636년 丙子胡亂으로 인하여 미처 간행하지 못하였다가 1648년 아들 김집이 간행을 종결지은 것이다.

四禮중 喪禮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고조되어 조선 전기·중기 학자들의 연구가 부분적이지만 문집에 편입되어 있다. 이는 유교사회의 핵심이 되는 忠·孝·烈의 세덕목중 「孝」를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규범이기 때문이다. 이 상례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하며 맺은 결과물이 《喪禮備要》이다. 이 후 조선 후기에 간행된 수많은 禮書의 지침서 내지 기본서의 역할을 한 것 같다.[31]

이 책의 체제는 凡例에[32] 잘 나타나 있다.

1. ㅇ《朱子家禮》를 祖述하였지만 간혹 부득이 보충해야 할 것은 보충하였다. 예를 들면 初終·楔齒·綴足·易服·深衣·襲·設氷·小斂후의 絰帶之類는[33] 모두 禮經에서 나왔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ㅇ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쳤는데 효자가 출입시에 입는 검은 상복은 古制도 아니고 國俗도 아니므로 方笠(방갓)과 生布로 만든 直領(깃이 곧게 되어 있는 무관의 웃옷의 한 종류)으로 대신하여 습속에 따랐다.
   ㅇ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겼으니 大祥章의 飮酒食肉은 禫뒤로, 遷主復寢은 吉祭뒤로 옮겼는데 실은 주자가 뒤에 의논해서 정한 것이다.
   ㅇ吉祭는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고 改葬은 變에 대비한 것이다.
   ㅇ祠堂之儀·四時之祭·墓祭·忌祭등은 비록 상례는 아니지만 상이 끝나면 제사지내므로 편말에 붙였다.
   ㅇ기타 節文사이에 添補한 것이 많은데 만약 《儀禮》·《朱子家禮》·今制·國制 사이에 서로 같고 다른 것이 있으면 모두 써놓아 참고에 대비하였다.
2. 圖說은 모두 《朱子家禮》에 의거하였는데 간혹 添補한 것이 있다. 보는 이가 살필 일이다.
3. 모든 喪具는 容入되는 숫자를 대략 써 놓았으니 혹시 맞지 않더라도 심히 멀지는 않다. 또 名目이 문자로 풀어쓰기 어려운 것은 곧바로 俗名을 써서 창

(30) 위 기사에 이어 「上而述朱夫子立訓之至意 下以爲我東方方來之準則」
(31) 18세기 이후 가장 많이 이용된 《四禮便覽》(李縡)에도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실용화시키고 있다.
(32) 《喪禮備要》(奎 1258) 凡例
(33) 상복에 함께 갖추는 허리띠

줄간에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4. 《朱子家禮》의 본문은 모두 한줄로 썼고 添入한 것은 모두 두줄로 하고 혹은 上下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인용한 여러 예설은 그 책 이름을 취하였고 瞽說(김장생 자신의 설)에 이르러서는 愚자나 按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이상의 범례로서 책의 대강이 설명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朱子家禮》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두 책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喪禮備要》가 喪具(제사지내는데 필요한 도구·물품)에 대한 배려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항목마다 상구에 대한 자세한 품목과 설명이 전제되어 있다.[34] 예를 들면 《주자가례》 初終(병이 났을 때부터 訃告를낼 때까지)에 있어 「疾病이 있으면 正寢에 거하게 된다」(疾病遷居正寢)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데, 〈상례비요〉는 初終具라 하여 초종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를 나열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나서 「疾病遷居正寢」이라는 본문이 나온다. 상구뿐만 아니라 후자에는 「친척·동료·친구에게 부고한다」(訃告于親戚僚友)라는 본문앞에 부고의 서식을 제시해 놓고 있다.

상례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단계 初終—大斂 (시신의 처리과정)

2단계 成服—奔喪 (상제들의 준비과정)

3단계 治葬—反哭 (장사지내는 과정)

4단계 虞祭—大祥 (상례의 종결과정)

이상의 네 단계에서 1,2단계가 준비 단계라면 3단계가 본격 단계이고 4단계는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마무리 단계이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사슬같이 연결되어 분명히 구분이 안될 때도 있다.

우선 제 1 단계를 보면 初終이란 병이 나서 正寢에 옮기고 사망하여 喪主와 護喪 등을 세우고 訃告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시신을 沐浴시키고 襲(옷을 갈아 입힘)하고 奠(제사올림)하고 爲位(제사지낼 위치를 정하고 자리를 깔고 곡함)한 다음 飯含(구슬과 쌀을 시신의 입속에 물림)한다.

다음은 靈座(시신앞에 탁자를 놓음)·魂帛(비단옷을 종이에 싸서 상자에 넣음)·銘旌(진홍빛 비단에 큰 글씨로 칭호를 쓰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어

(34) 항어 설명은 부록 (2)를 참조

영좌옆에 기대어 놓음)까지이다.

그 다음에야 친지들이 들어가 곡을 할 수 있는데 《喪禮備要》에는 「不作佛事」라 하여 불교의식을 금하고 있다. 이때 주인이 아직 成服하지 않았으므로 와서 곡하는 사람도 深衣를 입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신의 처리 과정인 제 1 단계도 세분하면 몇 개의 소단위로 나눌 수 있다. 위의 4개의 준비절차를 거치고나면 가장 중요 과정의 하나인 小斂인데 시신을 細布로 싸는 절차이다. 세포란 細白綿布로서 20자 가량 든다고 한다. 《喪禮備要》에서는 우리나라 東布는 폭이 매우 좁아서 반드시 반폭을 이어 꿰매 써야 마땅하니 곧 30자가 든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 括髮(머리를 묶음)·免髽(여자 복머리)·奠(제사올림)·代哭(대신 곡을 시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함)이 함께 진행된다. 《喪禮備要》에 의하면 環絰之具[35]과 絰帶之具가 더욱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다음이 시신의 처리과정의 마지막 절차이니 大斂이다. 소렴한 다음날 첫새벽이니 죽은지 3일째 날이다. 시신을 묶어 관에 넣고 떨어진 이빨이나 머리카락 손톱 등을 잘라 관 모서리에 넣고 빈 곳은 옷을 말아 가득채운다. 금이나 옥, 귀금속 등 패물은 넣지 않는다. 운구 동쪽에 靈牀을 설치하고 奠(제사)을 올린다. 남자 상제는 이때부터 중문밖 누추한 곳을 택하여 머물고 부인들은 중문안 별실에 머문다. 代哭하는 사람을 중지시키고 大功이하 服人으로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은 가서 자도 된다.

이상 시신의 처리과정인 제 1 단계가 끝나면 상제들의 준비과정인 제 2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는 상제들이 상복으로 갈아 입는 成服부터 시작된다. 성복은 대렴 다음날인 네번째날 상제들이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의 五服을 입게 되는 절차인데 기간은 3년·1년·9개월·5개월· 3개월로 나뉘어 있고 죽은 사람과 맺게된 내용과 근거에 따라 正服·加服·義服·降服이 있다. 제최에는 지팡이를 짚느냐 안짚느냐에 따라 杖期와 不杖期가 있다.

《喪禮備要》에는 成服之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일 앞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五服에 대해서는 「今制」·「國制」가 비교 설명되어 있으며 「按」이라 하여 김장생자신의 견해 피력이 많다. 이 부분은 《朱子家禮》 喪禮에 비

(35) 成服때 상제가 四角巾에 덧씌워 쓰는 삼으로 꼰 테두리

하여 우선 분량면에서 대폭 늘어났고 훨씬 복잡하다. 상례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 제 2 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心喪과 출입시의 의복이다. 《朱子家禮》에 없는 心喪부분이 《禮記》 등을 빌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원칙적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 출입할 때에는 方笠과 直領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俗制로서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變通이다.

객지에서 상을 당했을 때는 聞喪(초상이 났다는 소리를 들음)하고 奔喪(초상이 난 집으로 달려감)하게 된다. 분상하면 집에 가서 다른 상제들과 함께 成服하지만 분상하지 못했을 때는 4일째 되는날 혼자 成服한다.

成服부터 奔喪까지가 말하자면 상제인 服人들의 준비기인데 제 1 단계와 제 2 단계 모두 장례의 준비과정에 속한다.

3단계는 장례의 시행단계이다. 즉 시신을 땅에 묻는 본격 단계인 것이다. 治葬이라 하여 땅을 파는 작업부터 反哭까지이다. 이 과정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遷柩(영구를 옮김)→朝祖(사당에 가서 뵘)→奠(제사를 올림)→賻(부의를 드림)→陳器(명정이나 영거등을 준비함)→遣奠(영구가 떠날 때 지내는 제사)등의 의식을 거쳐 發引(영구가 집에서 떠남)까지 집에서 행하는 일련의 절차와 及墓(묘소에 도착)→下棺(관을 구덩이에 내려 놓음)→祠后土(后土神에게 제사지냄)→題(木)主(신주를 씀)→成墳(분묘를 만듬)→反哭(주인이하가 靈車 즉 상여를 모시고 천천히 돌아가면서 곡함) 등 산소에 가서 장례를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종결단계는 虞祭[36]부터 大祥까지이니 만 2년이 걸린다. 이 때부터는 전부 제사이다. 삼우제 다음에 卒哭을 지내고 나면 사실상 장례의 주의식은 끝나는 것이 되고 상제들의 음식과 잠자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완화된다. 졸곡 다음날 지내는 祔祭는 신주를 조상의 신주곁에 모시는 절차이다.

사람이 죽은지 1년이 지난 13개월째에 小祥, 2년이 지난 25개월째에 大祥을 지내면 상을 벗으니 장례가 완전히 끝난 것이 된다. 그러므로 喪禮와 祭禮는 이 부분에서 중복된다.

(36) 일진이 「乙丁己辛癸」에 해당하는 柔日에 再虞祭를, 일진이 「甲丙戊庚壬」에 해당하는 剛日에 三虞祭를 지낸다.

《喪禮備要》에는 특히 祝文과 告辭에 대한 서식이 자세히 예시되어 있다. 또 《朱子家禮》에 없는 吉祭와 改葬의 두 조항을 古禮와 丘儀(丘濬의 〈家禮儀節〉)에 의해 보충해 놓고 있다.

조선 후기 이루어진 수많은 예서중 실용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喪禮備要》와 18세기 陶菴 李縡의 저술인 《四禮便覽》이다. 전자가 喪·祭禮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冠·婚禮까지 정리 요약한 것이 후자이다. 《朱子家禮》가 원리만 제시하는 소략한 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선에서 古禮에 의한 보다 세밀한 보완작업이 성취된 것이다. 《喪禮備要》의 특징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인 喪具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여 실행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또 상복이 조선에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통됨으로서 조선화하고 《朱子家禮》에 없는 조항이 古禮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三. 《家禮輯覽》의 成立

《가례집람》은 김장생이 52세되던 1599년에 완성하였고 1685년 아들 金集에 의하여 교정되어 徐文重·李師命등 제자들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김장생이 그의 생애를 걸고 온축·완성한 필생의 저작이다. 그의 활동기라 할 청·장년기가 화려하지 못한 대신 학문에 전심 전력함으로서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그 스스로 《朱子家禮》를 미완성이라 인식하여 古禮(儀禮·禮記 등)와 여러 禮家의 예설을 모아 조목 조목 재해석하고 보충하였을 뿐만아니라 책머리에 圖說을 실어 古今의 儀物을 징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37] 본문은 10권 5책, 책머리에 圖說 1책을 붙여 10권 6책으로 편집된 목판본이다.

凡例에는[38] 책의 체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圖說은 모두 《朱子家禮》의 순서에 의거했지만 사이 사이에 보충해 넣은 것이 있어 그 순서가 같지 않은 것도 있으니 보는 사람이 살펴 볼 것.
2. 添補한 여러 학설은 모두 그 책이름과 篇目을 인용하였고 瞽說(김장생 자신의

(37) 제 1 장 생애 1599년 조항 참조
(38) 《家禮輯覽》(奎 6913) 凡例

설)에는 愚자와 按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3. 喪具에 대해서는 이미 《朱子家禮》와 《儀禮》의 舊制가 있지만 俗制의 편리한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 사용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하였다. 다른 것은 모두 이를 모방하였다.

이상 범례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朱子家禮》의 보충작업으로서 그 보충자료는 《주자가례》이전의 禮書와 이후의 여러 禮家의 예설이며 거기에 김장생 자신의 설로 보완하고 조선의 俗制를 포함시킴으로서 실용성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장생은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된 동기와 경위를 비교적 간략하게 밝히고 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朱子家禮》를 受讀하였는데 일찌기 通曉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병으로 여겼다. 친구 申義慶과 더불어 강론하기 여러 해였고 또 師門에 就正하여 드디어 거칠게나마 그 梗概를 粗得하였다[39]

라 하여 친구 申義慶과의 학습과 선생인 宋翼弼·李珥의 가르침이[40] 그의 예학 성립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곧 이어 여러 학자의 설을 취하고 각 조목아래 要刪·纂注하여 하나의 책을 지어 《家禮輯覽》이라 하였다[41]

고 하여 자신 이전의 여러 학설을 총정리한 책이 본서임을 밝히고 있다.

또 圖說을 만들어 책머리에 게재하고 나니 이 책이 名物을 모두 들고있고 의의가 粗明하여 初學의 선비가 취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42]

라 서문을 맺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신의경의 《상례비요》를 정리 보충하

(39) 《沙溪全書》 권5, 家禮輯覽序
「余自幼受讀家禮 嘗病其未能通曉 旣而從友人申生義慶 與之講論 積有年紀 又就正于師門 遂粗得其梗概」

(40) 김장생이 평생 선생으로 칭한 사람은 李珥·宋翼弼·成渾인데 송익필의 예학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다.

(41) 주(39)의 기사에 이어 「共取諸家之說 要刪纂註於逐條之下 編爲一書 名以家禮輯覽」

(42) 위 기사에 이어 「又爲圖說 揭之卷首 然後此書名物俱擧 義意粗明 初學之士或有取焉 則亦不無小補云爾」

는 작업을 통하여 그 기초위에 성립되었고 그가 필생의 업적으로 성취한 것이다.

김장생이 죽은지 반세기 후인 1685년 아들과 제자들의 노력으로 이 책이 간행될 때에 그들 부자의 수제자로서 학맥을 이은 宋時烈(1607~1689)은 後序에서 이 책에 대한 해제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있다.

> 朱子가 만년에 뜻을 다한 것은 오직 禮書 뿐인 즉 후학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 김장생은 《喪禮備要》《疑禮問解》를 지어 이미 그 常變에 대비하였다.[43]

송시열이 이 후서를 쓸 때는 이미 두 책이 간행되어 있었으므로[44] 이렇게 쓴 것이다. 김장생은 이 두 책에 그치지 않고, 《朱子家禮》가 草創·亡失의 나머지에서 나와 그 儀度·名物에는 독자가 병으로 여기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家禮輯覽》을 저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 조목 조목 해석하고 장구를 구별하고 빠지거나 소략한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의심나는 것은 빼버렸다[45]

고 하였으니, 이는 두말할 여지없이 《朱子家禮》의 완벽한 增補版이라는 평가이다. 더구나 책머리의 圖說은 古今 儀物의 징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집하여 명백히 한 것이니 文理를 조금 아는 사람은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어 그 공이 대단하다고 평가하였다.

《朱子家禮》가 草本이고 再修하지 않았으므로 후세에 주자가 엮은 것이 아니라는 설도 있을 정도인데 冠禮와 婚禮는 《儀禮通解》의 책머리에 있어서 학자가 스스로 미루어 알 수 있지만 喪·祭의 二禮는 주자의 손이 미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인 黃榦이 續編을 지었는데 상세하고 정밀하지만 주자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에 유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장생은 이 喪禮·祭禮에 더욱 공을 들여 물에 띄워도 새지않을 정도로 완벽한 이 《家禮輯覽》을 지었으므로 황간의 《家禮續編》과 이 《家禮輯

(43) 《家禮輯覽》(奎 6913) 後序(1685년)
「朱夫子晩年所致意者 惟在禮書 則後學於此 尤當盡心焉 旣爲喪禮備要 疑禮問解 以盡其喪變」

(44) 《喪禮備要》는 1648년에, 《疑禮問解》 1646년에 간행되었다.

(45) 주(43)에 이어 「遂逐條解釋 辨別其章句 塡補其闕略 訛者正之 疑者闕之」

覽》은 朱子學의 輿衛(보위)가 될 것이라 평하였다.

> 禮란 天理에 근본을 두고 있고 人道를 기강잡는 大端이기에 《書經》에 「天叙有典」 혹은 「天秩有禮」라 하였다. 공자도 夏商周의 因革을 논할 때는 반드시 예로서 말하고 朱子도 「典禮가 혼란스러워지면 儉人(섬인 : 마음이 간사하여 아첨하는 사람 ; 필자 주)이 되어 글과 법을 농간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조정을 오도한다」고 하였다[46]

고 전제하고 김장생이 이러한 주자의 유지를 받들어 이 책을 이루었으므로 주자에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李珥→金長生→金集의 嫡統을 계승하고 있는 宋時烈의 자부심까지 엿보이는 後序이다.

《家禮輯覽》은 우선 양에 있어서 《朱子家禮》의 5배 가량의 분량이다. 圖說도 후자가 家廟之圖·祠堂之圖로 시작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자는 三代宮盧圖·三代器用之圖·三代服飾之圖가 있다. 또 家禮總圖라 하여 총목차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家廟之圖는 없고 祠堂全圖가 있다. 그 내용도 《가례집람》이 훨씬 자세하다. 목차는 꼭 같지만[47] 관계 문헌을 총망라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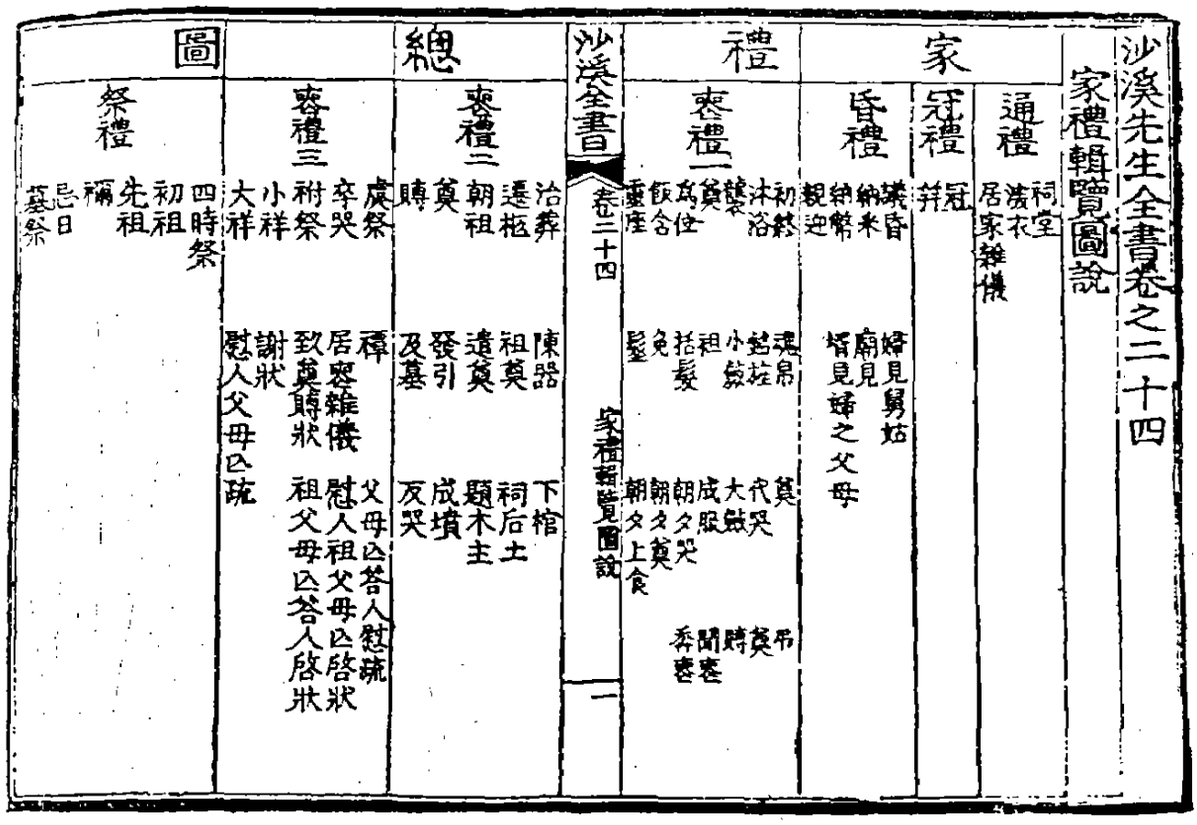

(46) 위 기사에 이어 「禮者本乎天理 而紀綱人道之大端 故書曰天叙有典 而又必曰天秩有禮 夫子論夏商周之因革 必以禮爲言 而朱夫子則又以爲典禮淆訛 便爲儉人 舞文弄法 迷圖誤朝」

(47) 위의 家禮輯覽圖說의 家禮總圖가 《朱子家禮》의 목차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실행가능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서술방법에 있어서 《주자가례》에서 小文으로 두 줄로 처리한 설명이 《가례집람》에서는 大文으로 뽑아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서 大文만 따라 가면 크게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였다.

喪禮중 가장 중요시되는 成服條를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살피는 예증으로 삼겠다.

《주자가례》의 成服條에는

> 厥明 (大斂之明日 死之第四日也) 五服之人 各服其服 入就位 然後朝哭相弔如儀[48]

라 大文으로 쓰고, 이에 대한 주를 小文 두 줄로 달고 있는데 한 자 낮추어

> 楊氏復曰 三日大斂 可以成服矣 必四日而後成服何也 大斂雖畢 人子不忍死其親 故不忍遽成服 必四日而後成服也 禮生與來日 死與往日 取此義也[49]

라 하였다.

《주자가례》에서의 이 간단한 첫 조항이 《가례집람》에서는 우선 成服과 服制로 나뉘고 성복자체를 小文 두 줄로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① 各服其服入就位 ② 朝哭 ③ 相弔如儀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각기 小文 두 줄로 된 설명을 달아 놓았다.

① 各服其服入就位(五服을 입는 사람은 각기 해당 상복을 입고 자기 자리에 나간다.)

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開元禮와 丘儀를[50] 인용하고 있다.

② 朝哭한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河西 金麟厚의 말을 인용하여 이는 朝夕哭의 朝哭(아침에 곡함)이라 하였다.

③ 相弔如儀(의절에 따라 서로 조문한다)

---

(48) 첫새벽 (대렴한 다음날, 즉 죽은지 넷째날이다) 五服을 입는 사람들은 각기 해당 상복을 입고 제자리에 자리잡은 후에 조곡하고 의절대로 서로 조문한다.

(49) 양복이 말하기를 「3일에 대렴을 한 후에 성복할 수 있다. 꼭 4일 이후 성복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대렴이 비록 끝났더라도 사람의 아들로 그 어버이의 죽음을 참을 수 없으므로 차마 급히 성복을 못하고 반드시 4일이된 후에 성복하는 것이다. 예는 내일과 더불어 생기고 죽음은 지난날과 더불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 하였다.

(50) 丘濬의 《家禮儀節》

이 절차에 대해서 丘儀와 魏堂의 설을[51]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愚按이라 표시한 자신의 견해에서 「《開元禮》[52]에 비로소 이 예가 보인다」고 주를 달고 있다.

또 《주자가례》에서 小文으로 된 주에 있던 「禮生與來日」(예는 내일과 더불어 생긴다)의 다섯자를 附註라 하여 大文으로 끌어 내고 禮記의 曲禮[53]와 戴震의 說을[54] 이끌어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자가례》에서 하나의 조항과 이에 대한 하나의 주로 처리된 성복조의 첫째 조항이 《가례집람》에서는 무려 5개 조항으로 나뉘고 각 조항마다 중국 예가 및 조선전기 학자의 설 또는 중국의 禮書를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는 주를 달고 있을 뿐아니라 김장생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55]

그러므로 《가례집람》은 《주자가례》의 세밀한 주석서이자 연구서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주자가례》가 그 이전의 예서의 전통을 이미 아는 사실로서 생략하거나 器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가례집람》은 시간적으로 4세기 후에, 공간적으로 중국이 아닌 조선현실에서 구체적인 실용의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중기라는 시점에서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되 《주자가례》이전의 예서와 《주자가례》 이후의 예설들을 총망라하여 주를 정밀하게 처리함으로서 《주자가례》에 대한 완벽한 보완작업을 성취하고 여기에 김장생 자신의 학설을 밝힌 연구서의 성격도 있다. 조선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친구 신의경의 저작이라고는 하지만 반은 김장생의 저술이라 할 《喪禮備要》가 喪·祭禮에 대한 실용서로 喪具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가득차 있고 조선의 俗制·물품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데 비하여 《가례집람》은 전서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전시켜 冠·婚禮까지 포함시켜 冠·婚·喪·祭 四禮에

(51) 魏堂의 《家禮會成》
(52) 당나라 현종때 왕법에 家禮를 國制로서 편입시킨 예서로 그 이전의 어떤 禮典보다 우수하고 종합적이어서 중국 전통문화의 집대성이라 평가받는다. 후대에 《社佑通典》에 전폭 수용되었고 송나라때 《開寶通禮》《太常因革禮》《政和五禮新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53) 《禮記》의 한 편명
(54) 戴振의 《儀禮正誤》
(55) 「愚」나 「按」이 붙은 항목이 그것이다.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가함으로서 《주자가례》에 대한 완벽한 연구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주자가례》의 보완작업으로 실용성보다는 이론의 집대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四. 《疑禮問解》와 《典禮問答》

《疑禮問解》는 김장생이 제자·문인·동료가 질의한데 대해 응답한 사항을 아들 김집이 수집·정리한 책이다. 김집은 70세 되던 1643년 봄 아버지의 舊稿를 교정하고 분류하여 이를 4권 4책으로 정리하고 1646년에 간행하였다. 그는 이 책을 본따서 자신이 문인들과 문답한 사항을 모아 그 속편의 성격을 띤 《疑禮問解續》을 부자의 공동작업으로 완성, 펴냈다.

1643년 李植(1584~1647)이 쓴 서문에

> 沙溪 김선생은 牛栗 두 선경에게서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禮에 뜻을 돈독히 하여 연구·강마하기를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구나 門人이 그에게 질문한 사람이 많았다. 선생은 널리 참고하여 평소 물음에 답한 것이 무궁했다[56]

고 하여 평소 김장생이 친지나 제자의 예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것이 많아 그것이 쌓여 이 책이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의 문답 태도는

> 반드시 여러 학설에 근거를 두고 유추하고 뜻을 비교하며, 요점은 定論에 돌아가 무릇 禮文之變과 品節의 마땅함이 거의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였다[57]

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장생과 예와의 관계를

> 예를 講解했을 뿐만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家習하여 평생의 律度가 되었다. 때문에 그 덕은 높고 업은 넓어 斯文의 羽翼이 되어 후학들의 도끼자루가 되었다.(중략)이 책은 반드시 선생의 직접 踐修한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시문이 있으면 해석하고 知行을 함께 진전시킴으로서 자신과 外物을 함께 성취시킨 공이 있다[58]

---

(56) 《疑禮問解》(奎 4117) 李植序文(1643년)「沙溪金先生 學事牛栗兩先正 自幼篤志于禮 研究講磨 至老不懈 知舊門人 從而質疑者衆 先生博稽有素答問不窮」

(57) 위 기사에 이어「必根據衆說 推類此義 要歸於定論 凡禮文之變 品節之宜 殆無遺蘊矣」

(58) 위 기사에 이어「竊聞先生之於禮也 非惟講解而已 固己身履而家習 爲平生律度 故其德崇業慶 羽翼斯文 爲後學柯 則有如此者矣 後之人幸毋褻 此書必若先生之躬自踐修 方有疑有解 而知行并進 成己成物之功」

고 하여 그 의의를 높이 사고 있다.

이식과 함께 申翊聖(1588~1644)도 서문을 쓰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김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서문을 썼을 것이다. 신익성 역시 김장생을 沙溪先生으로 호칭하고 있다.

> 門下의 여러 君子가 遺文을 撰次하여 예를 논한 책이 갖추어져 장차 세상에 크게 행할 것이라고 한다[59]

고 전제하고 「우리 동방이 同文之化를 입어 禮義가 있다고 하지만 나라 풍속이 隘陋하여 簡禮之經에 구차스럽게 매어 있어 純然하지 못하니 어찌 變事에 대처하여 제도를 만들어 경전에 맞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 하여[60] 당시 조선의 실정을 설명하였다.

> 오직 우리 선생에서 雜服을 學究하시고 三古이래 質文의 참고할 만한 것을 옆에서 구하고 널리 찾아 내어 證正하고 剖析하며 用力함이 오래 쌓여, 시원하게 막히는 바가 없어서 질문하면 대답하기를 洪鐘이 울리듯하였다.[61]

다시 말하면 김장생이 오랫동안 예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온축함으로서 질문이 있으면 막히는 법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그 결과

> 禮를 강론함에 있어 精(정심함)과 專(오로지함)함이 선생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문하의 선비가 德業을 흠뻑 받아 모두 빨리 닮을 수 있었다. 또 師道를 尊信함으로서 이 책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책이 한번 나오면 조야가 반드시 따라 써서 이로 말미암아 隘陋한 습속이 한번에 씻겨지고 過不及의 실수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62]

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1643년에 편집·교정되고 이식과 신익성의 서문까지 받았지만 정작 간행되는 것은 3년 후인 1646년이었다. 이 해에 金尙憲(1570~1652)으로

(59) 《疑禮問解》(奎 4117) 申翊聖序文(1643년) 「翊聖聞 沙溪金先生門下諸君子 撰次遺文 而論禮之書甚備 將大行于世云」

(60) 위 기사에 음에 「吾東方漸被同文之化 尉有禮義之稱 而國俗局於隘陋 安於苟簡禮之經者 寢々乎其未純 惡能制其變 而合乎經也」

(61) 위 기사에 이어 「惟我先生 學究雜服 凡自三古以降 質文之可考者 旁求博訪 證正剖析 用力積久 豁然無碍 人有扣質應之 如洪鍾符之」

(62) 위 기사에 이어 「講禮之精且專 未有如先生者也 是以門下之士 薰灌德業 咸能速肖 尊信師道 有此成書 此書一出 朝野必將相率 而由之一洗隘陋之習 免於過不及之失」

부터 또 하나의 서문을 받았다.

> 무릇 선비의 처신과 行事는 반드시 禮에 맞게 해야하는데 天秩(하늘의 질서 ; 필자 주)은 광대하고 古今의 禮制를 모두 궁구할 수는 없다. 성인이하가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묻고 물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후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이미 저술한즉 經이 되고 다시 註疏를 달은 즉 傳이 되었고 작업을 계속하여 大備되었다.[63]

고 학문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의 禮敎가 상당히 발달했지만 專門之學이 매우 드물어 講行할 때에 의혹과 잘못이 생기고 臆見(私見)·塗說(즉흥적인 설)이 생겨나 소루함을 면치 못하였다」고[64] 전제하고 나서

> 선생께서 이를 병으로 여겨 평일에 門人·朋友사이에 왕복 答問하면서 前代의 예서를 널리 참고하고 여러 예가의 講說을 채집하여 상세함을 이루었다. 더우기 급하고 엄숙한 처지에 분류하고 품목을 정하여 찾아 보기에 편하게 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 싶으면 서로 시비할 것도 없이 한번 책을 열면 시원스레 해석이 되어 明師·益友가 좌우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口論하여 주는 듯하다[65]

고 하였다. 나아가 이 책을 캄캄한 밤을 밝혀 주는 촛불에 비유하였다.

이상 세 사람의 서문으로 이 책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데 다음엔 편집자가 밝힌 凡例에[66] 의하여 책의 체제를 살펴 보자.

1. 문답한 조항이 넓고 번잡하여 순서가 없고 말이 중복되므로 분류방식을 《주자가례》에 의하여 배열하여 제목을 만들어 觀覽에 편하게 하였다.
2. 變禮가 많아서 혹시 《주자가례》에 없는 것은 따로 제목을 만들어 각 조에 붙였다.
3. 이 책은 答辭를 주로 삼고 인용한 경전과 여러 예설은 모두 한자 낮추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

(63) 《疑禮問解》(奎 4117) 金尙憲序文(1646년) 「夫士之處身行事 無斯須不由於禮然而天秩廣大 古今禮制 不可悉究 自聖人以下 疑必有問 問必有記 以至後世莫不皆然 旣已著之爲經 又復疏而爲傳 繼往開來之業 於是大備」

(64) 위 기사에 이어 「惟我箕封禮敎 有素逮于盛期 益加敦尙 彬彬郁郁 蔚蔚可觀而專門之學 亦頗罕見 至於臨事 講行之際 率多疑悞 間有臆見塗說 不免汰哉之誚」

(65) 위 기사에 이어 「先生爲是之病 凡於平日門人朋友 往復答問 輒博攷前代禮書旁採諸家講說 其所致詳 尤在於急遽嚴肅之地 彙分品別 各以類從 以便繙閱 使人心有所疑事有可質 不待聚訟 一開卷而渙然氷釋 有若明師益友 近在左右面論而口誦之」

(66) 《疑禮問解》(奎 4117) 凡例

4. 引證한 여러 예설은 모두 그 책이름과 篇目을 취하였고 혹시 그 아래에 論辨할 것이 있으면 按자로 구별하여 分註하였다.
5. 질문한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을 밝히고 혹시 그 성명을 잊은 경우에는 빠뜨렸다.

위의 범례 1항에서 밝혔듯이 잡다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분류하는 방법으로 《주자가례》의 순서에 의거했다지만 그것은 편의상의 방법일 뿐이지 내용은 별개의 문제였다. 예를 실생활에 적용하는데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변칙적 사례 등 變禮문제의 처리방법을 둘러싼 사제간의 해결책 모색이었다.

질문자는 책순서 대로 보면 黃宗海·吳允諧·申湜·宋浚吉·趙希逸·姜碩期·李惟泰·宋時烈·洪霽·李以恂·鄭弘溟·李敬輿·李尙馨 등 13인이 나타나 있다. 이 중 송준길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 200여 회 이상이며 다음을 강석기·황종해·이유태·송시열·신식·이상형·오윤해 순이고 홍방·이이순·정흥명은 2항, 조희일·이경여는 각기 1항씩이다.

특히 申湜은 《家禮諺解》를 저술한 南人系 학자인데 김장생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 책에도 20개 문항의 질문을 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김장생이 평소에 친지나 門人들이 그때 그때 의문나는 점을 수시로 물은 것에 대해 《儀禮》·《禮記》·《朱子家禮》·《丘儀》등 예설의 고전과 학설을 총동원하여 전거를 대면서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問答을 아들이자 수제자인 김집이 빠뜨리지 않고 수집하여 아버지 사후 자신도 70고령에 교정, 분류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의 禮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한 열기를, 또 아버지의 학문을 家業으로 계승한 父子 2대에 걸친 학문적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부록(3)의 목차에서 보듯이 비록 《주자가례》의 순서에 따랐다고 하지만 새로 만든 조항이 예컨대 別室藏主·不遷之位·童子服·稅服·吉祭 등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疑禮問解》의 문항은 481항인데 질문은 두자 낮게 처리하고 대답은 윗단까지 올라가고 전거처리는 한자 낮추었다. 전거에는 禮記·儀禮등 예경과 《朱子家禮》, 그 이후 이전의 여러 학자의 예설(丘濬의 《儀節》·楊復의 《正衡》, 魏堂의 《會成》 등)과 조선의 학자들(李珥·李滉 등)까지 총동원되어 있어서 김장생 학문의 깊이와 폭을 확인할 수 있다.

《典禮問答》은 인조가 반정으로 즉위하자 그의 생부인 定遠君(선조의 다섯째 아들, 1580~1619)을 제사지낼때의 廟號문제가 당시 典禮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김장생에게 편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答書한 것이다.

1624년 4월 그믐, 김장생은 77세의 노령으로 執義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고향인 連山에 돌아와 있었는데 예조판서 李廷龜가 인조의 私廟에 대한 조정에서의 논의가 분분하므로 고증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서 김장생은 이 일에 개입하게 되었다.

인조의 私家로 보면 宣祖는 할아버지이고 定遠君(대원군에 추존)은 아버지이다. 김장생은 私家의 논리가 왕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君臣관계는 父子之義이므로 私親인 定遠君을 考(죽은 아버지의 칭호)라 하면 大統에 不專하고 二本을 만드는 혐의가 있어 「害禮亂倫」이라는 것이 김장생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인조가 선조의 친손자로서 入承大統했지만 선조를 아버지의 칭호 考로 하고 정원군은 叔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조정 신하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인조자신도 「할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나서야 자신이 있다」고 하며 거부감을 보였다.[67] 이 때 定院君은 考라 결정되고 大院君으로 봉해졌다가 1627년 元宗으로 追尊됨으로서 사실상 김장생의 예론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학설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典禮問答》은 단행본으로 간행되지는 않았다. 상·하 두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권은 당시 典禮문제를 둘러싸고 담당관리들 내지 실력자들과의 왕복 서간문을 모은 것이다. 하권은 이 문제에 대한 考證부분이다. 중국역대 사실에서 왕위계승의 사례와 칭호를 전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왕복 편지의 내용은 이미 사망해 있던 定遠君의 廟號문제와 大院君에서 元宗으로 추존하는 과정에서의 논의와, 생존해 있다가 1626년에 사망한 정원군의 부인이자 인조의 어머니인 啓運宮의 服制문제[68] 및 1632년 仁獻王后(1578~1626)로[69] 추존되기 까지의 전례문제를 다룬 것이다. 1624년(인조

(67) 제 1 장 생애 癸亥(1623) 5월 5일 조항 참조
(68) 徐仁漢, 〈앞논문〉
(69) 인헌왕후는 具思孟의 딸로 인조의 어머니이자 定遠君(大院君)의 부인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啓運宮이라는 宮號를 받았다.

2년)부터 1631년(인조 9년)까지 8년여에 걸친 논쟁이었는데, 한마디로 宗統 문제가 주제이다.

1. 1624년 6월 與右相申敬叔(申欽) 延平李玉汝(李貴) 吏制吳汝益(吳允謙) 禮制李聖徵(李廷龜) 副學鄭景任(鄭經世) 趙飛卿(趙翼) 鄭子容(鄭弘溟) 崔子謙(崔鳴吉) 張持國(張維)書
2. 1624년 10월 23일 書知事李廷龜筵奏後
3. 1626년 5월 答申敬叔(申欽)書
4. 答張持國(張維)書
5. 1626년 여름 答崔子謙(崔鳴吉) 兼示張持國(張維) 鄭子容(鄭弘溟) 書
6. 答崔子謙(崔鳴吉)書
7. 答鄭子容(鄭弘溟)書
8. 1627년 1월 答韓士仰(韓嶠)書
9. 書宋戶部憲禮議後
10. 書延平府院君李貴筵奏後
11. 1630년 與張持國(張維) 論穆陵緬服事書 (없어짐)
12. 1631년 1월 與趙飛卿(趙翼) 崔子謙(崔鳴吉) 張持國(張維) 鄭子容(鄭弘溟)書
13. 1631년 答張持國(張維)書

이상 13통의 편지가 목록에 나와 있지만 11번째 1630년 張維에게 보낸 편지는 없어져 실제로는 빠져 있다.

《疑禮問解》가 김장생 평생에 걸친 작업이고 특히 그의 만년의 소산이라면 《典禮問答》은 반정후의 變禮에 국한된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으로 沙溪 金長生의 생애와 그 禮書의 성립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의 禮學은 스승인 龜峰 宋翼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栗谷 李珥에 就正하였으며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한 친구 申義慶과의 집중적인 토론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가 36세 되던 1583년(선조 16)에 최초로 이룩한 예서가 친구 신의경의 구고를 교정·정리한 《喪禮備要》인 바 이 책은 공동저작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계기는 1581년 아버지 黃岡 金繼輝가 사망하자 상을 치르면서 실행상의 의문점이나 미비점을 스승 송익필에게 묻고 스스로 역대 예경과 예설에서 고증해 냄으로서 자신의 체득한 바를 이 책에 반영시

킴으로써 이다. 이 책은 김장생 예학의 기초가 되었다. 간행된 것은 1648년 그의 아들 김집에 의해서였다.

《喪禮備要》는 冠·婚·喪·祭의 四禮중 가장 비중이 큰 喪禮에 대하여 집중적인 탐구를 하고 자연적으로 부수되는 祭禮까지 포함시킨 실용서이다. 《朱子家禮》의 喪禮보다 훨씬 자세하고 조선 고유의 제도를 俗禮라 하여 포함시키고 전기 학자들의 단편적인 禮說도 참고하고 있다. 특히 장례지낼때 필요한 물품과 도구인 喪具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하여 각 항목 앞에 전제하고 있어 실제를 대비해 놓은 점이 큰 특징이다.

김장생 필생의 역작은 《家禮輯覽》이다. 그는 과거에 실패하고 광해군의 亂政하에 소극적인 벼슬살이를 하였다. 기껏 지방의 군수·목사·부사 등을 간헐적으로 역임하면서 그의 청·장년기를 거의 학문, 특히 禮學에 전력하였다. 1599년 그가 52세 되던 해에 내놓은 이 책은 그의 평생을 건 저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喪禮備要》의 보완 작업을 기초로 하여 儀禮·周禮·禮記 등의 禮經과 역대 중국의 여러 학자의 禮說 및 조선 학자들의 학설을 두루 섭렵하여 《朱子家禮》에 대한 연구서를 이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朱子家禮》에 대한 조선 중기 학자의 완벽한 보완작업이자 자신의 견해까지 밝힌 이론서인 것이다.

예컨대 책머리에 있는 三代宮盧圖라던가 三代器用之圖, 三代服飾之圖는 《朱子家禮》에는 없는 부분이고 家禮總圖라 하여 목록까지 만들어 앞에 붙인 점 등이 그러하다. 이 책은 禮學이 조선 중기에 심화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증이 될 수 있으며, 또 조선 예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책은 1685년 송시열의 後序가 붙은 상태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疑禮問解》는 김장생이 평소 朋友·門人·弟子들이 질문한 것에 답한 禮論問答集이다. 481항목을 《朱子家禮》의 순서에 따라 분류·편집했는데 내용은 전혀 별개이다. 김장생 사후에 그의 아들 김집이 수집하여 편집한 것으로 1643년에 成書하여 1646년에 간행하였다. 김집 자신도 이 작업을 할 때에 이미 70세였고, 이후 속편의 성격을 갖는 《疑禮問解續》을 자신의 책으로 이루어 냈으니 父子 2대에 걸친 계속작업이었다.

이 책은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의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하여 禮經, 역대 禮說, 조선학자들의 학설, 자신의 견해 등을 두루 구사하여 그 답변이 종횡무진이다. 특히 國制인 《國朝五禮儀》와 앞의 《喪禮備要》 등을 인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變禮에 대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이 책은 《家禮輯覽》 이후 김장생의 예설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김장생이 만년에 더욱 해박한 예론을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그의 예론의 폭과 깊이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禮의 行用과 變禮 문제가 주종이다.

《典禮問答》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入承大統함으로서 제기된 왕실의 典禮問題에 대한 김장생의 견해를 서간문으로 엮은 것이다. 인조의 私親인 定遠君(선조의 다섯째 아들)을 인조가 稱考해야 할 것인지 稱叔(숙부라 부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어머니인 啓運宮이 1626년 사망하자 그 服制의 문제, 그리고 양친의 추존문제를 둘러싸고 예론이 일어났는데 그때 김장생과 조정대신들 사이에 오고 간 1624년에서 1631년 사이의 편지들의 모음이다. 김장생의 답서만 모았고 考證편이 있어서 김장생의 이론의 근거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조정에서는 인조의 뜻을 받들어 정원군을 元宗으로 계운궁을 仁獻王后로 추존하였지만, 김장생은 宗統으로 보면 宣祖와의 관계가 父子之義이므로 私親인 정원군을 考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 전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典禮問答〉인 것이다.

김장생이 조선 禮學의 태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저작이 기초가 된 것이며, 그의 예학의 성립은 조선 중기 예학의 발달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예가 조선에서 행해지면서 行用의 면이 부각되고 조선화되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부록(1) 朝鮮禮書目錄(초기～17세기)

禮書	著者	著述年度	刊行年度	卷：册	圖書番號	文集所在
1. 家禮考誤	金麟厚(1510～1560)			2쪽		河西集
2. 奉先雜儀	李彦迪(1491～1553)	1550		1册	奎)3073	
3. 祭禮	李賢輔(1467～1555)			2쪽		聾巖集
4. 退溪喪祭禮答問	李滉(1501～1570)			2册	奎)4318	
5. 擊蒙要訣	李珥(1536～1584)	1577		1册		栗谷全書
6. 祭儀鈔	李珥	1577		1册		栗谷全書
7. 家禮註說	宋翼弼(1534～1599)		1762, 1882(?)	3:2	奎)4076	龜峯集
8. 喪禮考證	金誠一(1538～1593) 柳成龍(1542～1607)	1581		3:1	奎)11717	
9. 喪禮備要抄	申義慶(1557～1647)		1620	1册	藏)1-118	
10. 喪禮備要	申義慶 金長生(1548～1631)	1583	1620, 1648	2册	國)古5213-25 奎)1258	沙溪全書
11. 家禮輯覽	金長生	1599	1685	10:6	奎)6913	沙溪全書
12. 疑禮問解	金長生 金集(1574～1656)編		1643, 1646	4:4	奎)4117	沙溪全書
13. 典禮問答	金長生			2:1		沙溪全書
14. 家禮考證	曺好益(1545～1609)		1646	7:3	奎)717	
15. 五先生禮說分類	鄭逑(1543～1620)	1611	1629	12:7	奎)969	
16. 五服沿革圖	鄭逑		1629, 1665	1册	奎)11634	
17. 深衣制造法	鄭逑			15쪽	奎)1378	寒岡先生文集
18. 四禮訓蒙	李恒福(1556～1618)	1614	1622, 1678	1册	國)한-29-78 藏)1-56, 57	
19. 讀禮隨鈔	金尙憲(1570～1652)	1618		4:4	奎)4265	
20. 家禮附贅	安玑 安鼎福(1712～1791)	1628	1758	8:4 6:1	奎)4265 國)한-29-18	
21. 家禮諺解	申湜(1551～1623)	1632	1632, 1665	10:4	가람)古181.1-Si62gy-v.1,2,3,4	
22. 疑禮問解	姜碩期(1580～1643)	1638	1772	1册	藏)1-91, 奎)6741	月塘集
23. 疑禮問解續	金集	1643		1册	奎)5731	愼獨齋先生遺稿
24. 古今喪禮異同儀	金集	1649		4:2	奎)5731	愼獨齋先生遺稿
25. 家禮源流	兪棨(1607～1664)	1643	1714	14:8	奎)1633	
26. 家禮源流續錄	兪棨		1714	2:1	奎)1634	
27. 家禮源流	尹宣擧(1610～1669)	1646後	1735(?), 1775	18:10	國)한-29-55	
28. 家禮鄉宜	趙翼(1579～1655)	1644		7:2	國)한-29-34	
29. 四禮問答	金應祖(1507～1667)編	1645	1645, 1656	4:2	國)한-29-46	
30. 喪禮備要補	朴建中(?)編		1806	12:8	奎)2439	
31. 經禮類纂	許穆(1595～1682)	1649	1882	5:4	奎)12300	
32. 尤庵經禮問答	宋時烈(1609～1689)			11:5	藏)1-82, 奎)5729	尤庵先生文集
33. 尤庵先生禮說	宋時烈			1册	想白)古181.254-So58	
34. 四禮笏記	李惟泰(1607～1684)	1668前	1957	1册	古)1170-1	草盧全集
35. 四禮纂說	李爀(1661～1772)		1867	8:4	奎)4418	
36. 家禮要解	朴世采(1631～1695)	1683		7:1	國)고-159-7	
37. 三禮儀	朴世采	1689	1711, 1752	3:1	奎)6991	
38. 六禮疑輯	朴世采			33:14	奎)1162	
39. 南溪先生禮說	朴世采 金榦(1646～1738)編		1718	20:10	奎)6727 國)한-29-23	
40. 禮記類編	崔錫鼎(1646～1715)		1693	18:5	古) 1325-27	
41. 明齋先生疑禮問答	尹拯(1629～1714)			8:4	奎)4718	
42. 寒水齋先生禮說	權尙夏(1641～1721)			1册	藏)1-99	

※ 奎)는 규장각, 藏)은 장서각, 國)은 국립도서관임.

부록(2) 《朱子家禮》 항목해설

〈通禮〉(일상생활의 예)

祠　堂 : 조상의 신주를 모셔 둔 집

深　衣 : 상하가 연결되고 몸을 깊숙히 감출 수 있게 만든 평상복

居家雜儀 : 평소 집안에서 倫理를 바르게하고 恩愛를 돈독히 하기 위해 행하는 예

〈冠禮〉(성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예)

冠　　: 남자 15세~20세에 행하는 성인식

笄 (계) : 여자 15세에 행하는 성인으로 비녀를 꽂는 의식이다.

〈婚禮〉(혼인하는 예〉

議　昏 : 남자 16~30세, 여자 14~20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의논하는 것.

納　采 : 주인이 편지를 써서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 답장을 보내는 것. 원래 혼인을 청하는 의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納幣로 대신함.

納　幣 : 절차는 납채와 같고 청단·홍단의 비단 두 감을 보냄

親　迎 : 신랑이 신부를 맞아 오는 예식

婦見舅姑 : 혼인한 이튿날 일찍 일어나 신부가 시부모에게 뵘

廟　見 : 혼인한지 3일째날 주인은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에 가 뵘

壻見婦之父母 : 혼인한지 4일째날 사위는 신부의 부모를 가 뵘

〈喪禮〉(장사지내는 예)

初　終 : 병이 나서 正寢에 옮기고 사망하면 喪主와 護喪을 세우고 訃告할 때까지의 절차

沐　浴 : 시신을 목욕시킴

襲 (습) : 옷을 갈아 입힘

奠 (전) : 장례지내는 중간 중간의 제사

爲　位 : 상제들이 제사지낼 위치를 정하여 자리를 깔고 곡함

飯　含 : 시신의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림

靈　座 : 시신앞에 탁자를 놓음

魂　帛 : 비단옷을 종이로 싸서 접어 상자에 넣음

銘　旌 : 진홍빛 비단에 큰 글씨로 칭호를 쓰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어 영좌옆에 기대어 놓음

小　斂 : 시신을 細布로 싸는 절차

袒 (단) : 남자상제가 웃옷의 한쪽어깨를 들어냄

括髮(괄발) : 삼으로 머리를 묶음

免髽(면좌) : 여자 상제의 복머리

代　哭 : 사람을 사서 대신 곡을 시켜 곡소리가 그치지 않게 함

大　斂：소렴한 다음날, 즉 죽은지 3일째날 새벽 시신을 묶어 관에 넣음
成　服：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절차 五服이 있다.
朝夕哭・奠・上食：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朝奠・夕奠을 지내고 식사시간에는 상식을 올림
弔・奠・賻：조상할 때는 소복을 입고 올리는 물건은 향・차・양초・술・과일 등. 부의는 돈이나 비단으로 함
聞　喪：초상났다는 소리를 들음
奔　喪：초상이 난 집으로 달려감
治　葬：관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절차
遷柩(천구)：영구를 옮김
朝　祖：영구를 받들고 사당에 가서 뵘
賻　　：부의를 올림
陳　器：명정이나 영거 등을 준비함
祖　奠：발인전에 영결을 고하는 제사
遣　奠：영구가 떠날 때 지내는 제사
發　引：영구가 집에서 떠남
及　墓：영구가 묘소에 도착함
下　棺：관을 미리 파는 구덩이에 내림
祠 后 土：后土神에게 제사지냄
題(木)主：신주를 씀
成　墳：분묘를 만듬
反　哭：주인이하 상제가 靈車를 모시고 천천히 가면서 곡함
虞　祭：初虞・再虞・三虞의 세번 지냄
卒　哭：초상난 날부터 3달되는 달 중순경 剛日에 지냄
祔　祭：졸곡 다음날 신주를 조상의 신주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小　祥：죽은지 1년만인 13개월째에 지내는 제사
大　祥：죽은지 2년만인 25개월째 지내는 제사
禫　祭：대상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로 상복을 벗음.
居喪雜儀：
　○致賻奠狀：부의를 올릴 때 쓰는 글
　○謝狀：아들이나 조카를 시켜 謝書를 발송케 함
　○慰人父母亡疏：남의 부모가 죽었을 때 위로하는 글
　○父母亡答人慰疏：부모가 죽었을 때 남이 위문한 글에 답하는 글
　○慰人祖父母亡啓狀：남의 조부모가 죽었을 때 위로하는 글
　○祖父母亡答人啓狀：조부모가 죽었을 때 남의 위문한 글에 답하는 글

〈祭禮〉(제사지내는 예)
四 時 祭：계절마다 仲月에 지냄
初　祖：시조를 제사지냄

先　　祖 : 高祖를 제사지냄
禰　(예) : 아비사당에 제사지냄
忌　　日 : 부모가 죽은 날
墓　　祭 : 3월 상순에 묘옆에서 지내는 제사

부록(3) 《疑禮問解》 目錄

卷之一

家禮圖

服制圖爲出繼子降服期，服制圖誤處，嬰制之誤，神主皇顯字義，韜藉，韜制，韜藉紫緋之義，

附註

附註編入

通禮 祠堂

殿屋厦屋之制，後寢

四龕奉主

前後室配(祭見下前後妻合葬條)，庶人亦祭及高祖

宗法

七十老而傳，長子無後次子之傳重，立後者必聞官，立後後已生子，長子繼後則次子不宜奉祀，兄亡弟及後兄妻立後，獨子爲大宗後，次孫承重死後嫡孫妻及次孫妻皆立後，歸宗，良妾子奉祀，本生親稱號

班祔

承重長子無後班祔，班祔分排，祔位坐次，姪之父自立祠堂，三殤立主(見下殤喪條)，殤喪虞後班祔(見下殤喪條)，三殤之祭，本生親神主無主祭者姑祔於祖廟，(附)別室藏主，祭三代家玄孫承重而高祖母在則別室祭高祖，無後姑姊神主祭之別室，妾母祭所及稱號

晨謁

主人不在餘人不可獨行晨謁

出入必告

瞻禮唱喏

參

重行序立，出主，儀節四拜，先降後參後降之別，襴衫，帽子，假髻，特髻

俗節

四節墓祭拜參家廟，生辰

有事則告

贈職宜後書，焚黃，告事或不用祝，孝玄字義

祠堂火

家廟焚改神主

遞遷

最長房之子雖親未盡當遷於次長房，最長房當改題祧主， 最長房不能奉祧主則宗子仍安於別室， 宗子死後叔父奉祀則祧主當還入祠堂， 最長房祭祧主時親盡宗子位次，最長房之義，庶孽爲最長房，(附)不遷之位，親盡祖封勳不遷高祖當遷， 始封勳者不遷次勳當遷，遠代不遷位稱號

深衣制度

深衣之制，裁衣之制，幅巾

居家雜儀

敎之自名，妻父母稱號及自稱

冠禮 冠

士冠禮，三加冠服，字冠者，醮醴之異，將冠遇喪

笄

許嫁

昏禮

男女嫁娶，婚書式，納徵，帔制，父拜，牢字義，舅往婦家見婦， 贄幣，成婚久後廟見，舅姑沒後廟見，壻見婦之父母有幣，將婚遇喪

喪禮

喪禮當遵用朱子遺令

初終

復衣，復衣不用於襲斂，復衣置靈座

主婦

主婦稱謂

易服

齋衰衣冠，被髮

治棺

喪具預備

沐浴

沐浴水

襲

裹肚勒帛之制 襲衣右衽，襲用綱巾行縢，幅巾之制 女喪用掩，襲用深衣兼用公服，握手四繫之非

卷之二

喪禮 襲

帽制， 並有祖父母及父母喪襲斂先後， 服中死者襲斂用吉， 始死奠家禮儀禮異同，奠于尸東

飯含

飯含，含錢，飯含時主人猶被髮

銘旌

家禮銘旌條註誤字，銘旌尺度，大夫士之辨， 婦人銘旌稱號從父實職，庶孽婦人銘旌稱號，立銘旌拜圖

親厚八哭

主人未變服弔者 不須變服及主人出見尊者

小斂

絞布連幅，在衽連幅，左衽不紐，小斂未結絞，小斂變服，白巾布， 齊衰以下去帽著頭巾，婦人髽斬衰以麻齊衰用布，婦人髻，布頭巾， 括髮之制及斬齊括免之辨，環經，襲經在小斂後， 還遷尸牀，小斂後主人始就阼階下，小斂訖謝賓，小斂奠主人不拜之疑，代哭

大斂

棺巾用褥席， 棺中大斂非古， 始死所覆之衾至大斂用之， 大斂變服，大斂後謝賓，大斂後設靈座故處，成殯或沙或塗， 殯後主人位以北爲上，靈牀東首之非，殯廳長燈非禮

殤喪

三殤治喪之禮

成服

大斂雖過時不可卽日成服，喪布連幅，斬衰中衣緝邊，冠梁作帽，首絰， 斬衰首腰絰寸數等差，斬衰首絰左右本之辨，首絰不結纓之非，腰絰散垂之制，絞帶之制， 綴衽斬齊之異，負版辟領衰楊儀之非，期以下衰不裁裁闊中之非

杖

苴杖六節之非，婦人服制，童子服制，童子無首絰， 衰服不補不改，並有祖父母及父母喪成服先後，喪服之位以輕重爲次，五服相弔儀

斬衰

斬衰三年，妾爲君之父母，練修始爲其後者稅服， 庶子爲長子不服三年，父在爲長子不服三年，爲長子不服三年有四種，喪服圖式祖爲嫡孫服三年之誤， 爲所後曾高祖承重服，承重孫妻爲祖父母服及玄孫承重孫妻若曾孫妻服，夫君父不知死亡， 嫡孫在喪無後而亡庶孫代服

齊衰

妻爲父之繼母嫡母養母慈母從夫服，母爲嫡子無壓降，收養子服， 族屬雖有恩義不可加服，(附)並有喪，並有君父喪，父母偕喪異几筵持重服， 父喪中母死及母喪中父死服，父喪未葬以斬衰行事母殯，父母喪偕在道先父下棺先母，父喪中祖父母死代服，祖喪中父死代服，並有祖父母及父母喪襲斂先後，並有祖父母及父母喪成服先後， 嫡孫祖母喪中母亡持服及稱號，並有喪前喪大祥當服其服而行祭， 父喪未畢不可行祖母禫及吉祭，並有喪前喪之禫過時不祭，父死喪中嫡孫承重改題主宜在喪畢後

杖期

父在爲母三年家禮因時王制， 父在爲母當從古禮服期， 父在爲母期楊儀與家禮異，

父在母喪練制與期服自別, 父在母喪祥後當撤几筵, 父在母喪大祥後朝夕上食之非, 心喪書疏式, 父在母喪不行吉祭, 父在母喪計吉祭之期後常, 父在爲出母服周, 爲嫁母服, 爲父後者爲嫁母出母服及母爲子服, 爲父後者爲出母更歸依已者不服, 出母嫁母輕重, 父在爲慈母杖期猶爲心喪及爲慈母黨無服, 父卒爲父後者及諸子爲○母繼母改嫁服, 爲所後母及祖母見出者不服

卷之三

不杖期

爲出繼子服, 出繼者所生親喪以服爲位次及服盡後參祭哭, 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已則否, 妾孫承重爲其所生祖母爲服, 女適人者無夫而有女子則不以無子論, 無夫與子者爲其父母猶服期, 家禮不杖期條繼母嫁母之誤字, 姊妹旣嫁相爲服, 遭服而出繼者當遂其服, 出後者爲本宗適人者再降, 女君沒後妾爲女君黨及女君爲妾, 祖喪期後服色, 服中赴擧, 服中聞樂

齊衰三月

爲大宗子大宗婦服

大功

大功始去負版辟領衰, 出繼者爲本親適人者再降, 出繼者之妻爲夫本親再降, 姑爲嫡婦不爲舅後者, 女適人父在則爲當爲父後者降, 祖父爲次孫承重者服本服, 大功廢業, 大功以下計閏

小功

出母黨及爲人後者本生母黨服, 嫁母黨服, 繼母黨服, 外親適人不降, 小功稅服, 內外兼親者服制當以親者爲先

緦麻

庶子爲父後者嫡母卒後爲其母, 爲人後爲本生外親, 庶子爲父之他妾, 爲妻嫡母, 無子庶母, 爲父之曾高祖, 舅之妻, 兩妾相爲服緦不降之誤, 服制輕重之辨, (附)童子服, 童子爲長者遞減報服

殤服

殤服遞降, 凡殤計年以月, 生未三月之殤, 適長殤與他殤同, 冠笄嫁娶不爲殤, (附)稅服, 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已則否降而在緦小功者, 稅稅服全服日數, (附)變制, 除服月數從始死日計

心喪

爲師, 朋反服

朝夕哭

朝夕哭不拜

奠

祭奠且哭且拜, 墨奠與朔有差, 俗節上食後別說時食, 三年內殷奠無參降

上食

禮無夏日三上食，上食終三年，兄弟無後服內不宜几筵， 父母喪中子死則成服前廢朝夕上食

弔

弔當立哭，主人未變服弔者不變服，內外喪弔喪，婦人喪弔而不哭，不知死則不哭，畏壓溺不可一槩不弔，受弔之節及弔變禮，朋友分厚練後弔哭， 旣除喪而受弔，不相識者來見非爲弔慰則不哭

聞喪

家禮聞喪未行條脫成服二字，聞外喪，無服爲位，冠婚祭遇喪

奔喪

奔喪者墓遠則不必過家先之墓，小功以下奔喪主人已成服則四日成服

治葬

祠后土，后土改稱，祠后土執事東上，祠后土焚香，祔先墓祝辭，下帳， 筲數及五穀名，翣用周尺

作主

火夫無主，韜藉，坐式櫝制之辨

遷柩

已除服者服色，無服之親服色

朝祖

朝祖時燃燭，朝祖時開門無告辭，奠說如初，神不西面

遷于廳事

導柩右旋，方相

祖奠

祖字之義，祖奠兼夕奠，柩衣上玄下纁，柩衣之稱

遣奠

旁親通用永訣終天，遣奠拜禮

發引

偕喪在道先父下棺先母

窆

隊道之僭，合葬，合葬棺齊頭，先後葬，前後妻合葬，兜柩兩頭， 贈禮，玄纁置柩東傍

祠后土

土地祝辭

題主

題主時主人以下位次，無官者神主稱號，婦人行第，婦人神主稱號從夫實職， 庶孽婦人神主稱號，妻喪神主屬稱，妻主夫喪，外祖神主題式，卑幼神主陷中亦書諱， 旁題從寫者之左，妻若乳兒奉祀，題主人謝禮，題主奠從俗加說，父母皆亡題主祝自稱，攝主祝辭，題主祝文讀畢懷之

成墳

成墳之制，成墳奠，墳墓遇賊見毁，(附)虛葬，虛葬之非，(附)權葬，權葬之非

改葬

改葬靈座，改葬朝夕哭奠上食，改葬亦先輕後重，改葬虞祭，改葬爲母亦緦，婦爲舅姑改葬緦女適人者不服，承重者改葬緦，父喪中改葬母告廟，父葬前改葬母重服行奠，父喪葬後改葬母服緦行事，前母繼母出母嫁母改葬服，改葬不與宴樂居外，改葬除服之節

反哭

反魂，奉主就位櫝之，異居者歸家

卷之四

虞

虞祭日早晚，父喪遷母合葬先父虞翌日行母虞，渴葬者報虞卒哭必竢三月，尸不必童，倚杖，三年內階不位，虞祭無參神，虞祭有飯羹，喪中祝主人不稱官，夫祭妻子不讀祝，無執事則自讀祝，虞祭母不宜亞獻，進茶，利成之義，虞祭辭神與時祭不同

卒哭

玄酒，陳饌左說，虞卒哭告利成之異

祔

祔祭宗子告祠堂，祔考並祭祖妣二人，祔祭祝辭，宗子告亡者尊則稱府君，祖喪中孫死祔祖，主妾喪君自祔，妾母祔祭，祔祭飯饌左說，祔祭後祭稱孝禫前書疏稱哀，祔祭後布綱巾

小祥

小祥練服，葛經，三重四殷之制，去衰負版辟領，爲母十一月而練者不計閏，夫爲妻亦十一月而練，夫爲妻小祥卜日，將行練祥禫祥變除之節，服朞者練後服色，十一月練服與朞服輕重，小祥後上食哭，小祥後未除服者會哭，小祥後晨昏展拜，追服人變除

大祥

未大祥間假以出謁者，并有喪者前喪大祥服其服而祭，大祥後綱巾，繼禰之家祥後新主姑安於祠堂東壁吉祭後就正位，祔母於父則并告祖先，父在母喪祥後撤几筵，父在母喪祥後上食之非，禫前書疏稱號，喪服不焚埋大祥計閏

禫

禫祭有無，妻喪中父死其子不禫，嫡孫祖喪禫時母亡，所後喪中不可參本親之禫，父母喪中不可行祖母禫與吉祭，并有喪前喪之禫過時不祭，禫祭服色，禫祭著吉擧哀，禫後著微吉之冠吉祭後著純吉冠服，禫後服色及吉祭後復寢，禫後飮酒食肉，(附)禫在仲月卽行吉祭，吉祭改題祝祖先稱號，告五代祖自稱玄孫，父在母喪不行吉祭，父先亡母喪吉祭，父喪中不可行祖母吉祭，埋主

居喪雜儀

外憂內憂之辨，喪中往哭宗族，喪中往哭異姓，喪中祭祀，喪中祭先之服

書疏

本生親喪書疏式

祭禮 時祭

祭 用丁亥，齊戒，祭時拘忌，祭四代，支子所得自祭者，茅沙紅絲，果實之品，生時所不食不祭，祭不用生魚肉，祭用燒酒不用桃與鯉，祭時早晚，設饌式，焚香後再拜，初獻啓飯蓋，祭酒，祔位酌獻後於祖先，厭之義，一食九飯之義，家中祭土神，將祭遇喪

初祖

初祖 先祖設位之異，束第用紅絲

禰

禰祭，時祭禰祭過時

忌日

忌祭義，忌日在閏月或月晦，忌祭與朔望相值，並祭考妣，忌日變服，忌祭墓祭炙品，並祭祝辭，諱義，忌祭祝辭，逮事祖父母忌，喪中祖先忌祭一獻無侑食，父喪中母忌用肉，宗子葬前祖先忌祭墓祭支子亦不行，親戚服中祭祀之禮

墓祭

墓祭之義，墓祭時日，親盡祖墓祭，墓祭服色，墓祭無進饌侑食，墓祭祝辭，三獻後肅俟，諸位祭畢祭土地，土神祭饌